

## 제 92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월 21일 상오 10시 4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월 21일 하오 12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박두순, 김남진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 91회 제 2, 3, 4, 5차 회의록 통과
    - 2) 건의서 제출상황 보고 ( 연탄관계 )
  - ◆ 부의사항
    - 1)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 목포시 공설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일부 개정안
    - 4) 목포시 중요재산 일부 매각처분안
    - 5)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안
    - 6) 목포 향진개오물취사 단속건의의 건
    - 7) 용당 도선장의 건전한 운영에 수반한 사설 도선 단속의 건
8. 토의사항

◎ 제 91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91회 제 3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91회 제 4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91회 제 5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건의서 제출상황 보고  
서기 박찬대 낭독 ( 연탄관계 )

◇김 성 균 의원

-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김 의장과 정응표 의원이 상경하여 이에 대한 난관을 타개하신 공에 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바이나 사전에 좌담회 결의라도 있었다라면 한다. 이러한 점 앞으로 주의하여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동감이다 앞으로 여사한일이 있으면 서면 혹은 회장이라도 통지하여 주기를 의장단에 요청하는 바이다.

◇정 응 표 의원

- 그 당시 김의장의 손녀결혼관계는 급작한 용건이 되어서 그러한 절차를 못밟은 것 같다. 참고로 말한다.

◇강 부의장

- 앞으로 주의하겠다.

◇의장 김 상 대

- 사범학교 부지 조사관계에 있어 본 건 동의 당시는 교육위원회 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사범학교에 양도하였다는 설도 있어 완전한 조사를 미료하였음을 중간 보고하는 바입니다.

◇하 시장

- 상수도공사 관계중간 보고하다. 내용을 생략한다.

◇김 성 균 의원

- 하시장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공사에 종적 횡적으로 다대한 공적을 남긴 현주교에게 감사장을 진정하고 항만계속준설 요청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정식 제출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처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집행부의 장이나 그 보좌기관은 법에 의한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때에 한하여 회의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우리시에서는 하시던지 출석하게 되는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반면 저반 정기의회를 통한 시민의 여론이 각간부의 부재로 인한 폐단의 원성도 있는 것이니 계획중이라도 시민의 불편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배려 있으시기를 참고로 말하옵니다.

◇하 시장

- 대단히 좋은 발언이십니다. 의회 개회중 각간부를 출석시킨 이유는 13만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참석하여 제반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자는데 있었으나 의회측의 요청이라면 시정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의원의 견해는 하시장 도미보고시 선진국가의 의회운영의 예를 참작하여 회의법정시간인 상오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를 고쳐서 야간회의라도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점등은 차후 좌담회라도 가져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고하도록하면 좋을 것 같다.

1) 단기 4292년 제 1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92년 제 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
- 4) 목포시 중요 재산매각 처분 안
- 5)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 안

◇부의장 강 영 락

- 안전 상정 선언하다.

◇서기 박 찬 대

- 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제안설명

◇교육위원회 이 사무장

- 부의안건 제 5항의 제안설명 김일섭 의원 동특 추경제안설명 에서 1,000세대 이상의 동은 2명 그 미만의 동은 1명의 직원을 배치한다 하였으나 만약 999세대의 동과 1,001세대동의 경우는 여하히 할 것인가

◇이 정 권 의원

- 동특에 인건비를 지급키 위하여 경상비를 삭감한 이유여하

◇김 성 균 의원

- 동특에서 그 세율을 120/100으로인상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감한 이유여하

◇명 남 철 의원

- 일반 회계 추경에 있어서 91회 회의시 본 의원이 지적한 요감액 부분은 여하히 하였으며 남교시장은 연동시장과 겸임하였다하여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폐산한 죽교동 시장 주임과 연동시장을 겸임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정 응 표 의원

- 용당동 김기봉씨 관계예산이 금반의 추경에 계상안된 이유 및 죽교동 2구 동사무소근방의 배수공사 예산이 계상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성 균 의원

- 농촌개혁비에 국고 보조가 없는 과목을 당초에 시비로써 75만 환을 편성한 이유여하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김일섭 의원 질문의 동직원 배치기준을 1,000세대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인으로 결정 지은 것입니다.

- 이정권, 김성균 의원 질문의 보상금과 경상비의 삭감 이유는 당초예산은 150/100으로 되어있던 것을 1120/100으로 인하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김성균 의원 질문의 농촌개혁비 75만환 계상이유는 당초 도에서 국고보조가 있을 것이니 계상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나 차후 확실한 지시가 있다면 계상 하기로 현재는 예비비에 돌려 두었습니다.

◇김 일 섭 의원

- 부의안건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를 각 해당 책임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으로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정 응 표 의원

- 내항 준설관계에 있어 정기 의회시 현장을 보았고 현재의 실태를 보드라도 이의 취체관서 유무조차 알 수 없는 형편으로 의아스럽다. 지금현재도 공공연히 오물진개를 버리고 있으니 설사 준설을 한 후에도 이러한 형편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무과의 이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정의원의 발언에 동감이다. 듣는바에 의하면 이 시각에 시장실에 경찰서장, 검찰청장등이 합석하여 있다하니 본 회의에 출석토록 의뢰하고 이 문제와 아울러 용당도선장 사설 모-다선 단속문제등을 정식 상정하여 건의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 목포시 진개 오물 취사단속 건의 건

◎ 용당도선장 건전한 운영에 수반한 사설도선단속의 건

◇부의장 강 영 락

- 양건 상정을 선언하다.

- 경찰서장과 검찰청장 출석을 요망키 위하여 5분간 휴회를 선언하다.

( 하오 1시 30분 )

- 속개를 선언하다.

- 방금 경찰서장과 검찰청장의 출석을 요망하고 그 뜻은 전달 하였던바 급한 용무로 참석불능인 것 같으니 의회의 결의로써 본 건 건의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김 창 희 의원

- 이 문제 뿐이 아니라 당 목포항은 노임이 지극히 고율인 관계로 응당 목포항에 입항할 화물이 타항으로 뺏기는 실정으로서 일익 피해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등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각 노총 단체를 총망라하고 중요 각 기관장 회의를 매월 갖도록하고 이에 대한 방법등은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 ( 제주로 부터의 해산물상의 화물 입항 관계의 예 발언 생략 )

◇김 상 대 의원

- 김창희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저반 당의회의 결의로써 제주도를 합한 분도운동 추진동의를 가결된바도 있었는데 제주도민은 만약 분도가 실현되더라도 전남에는 합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 모인사가 마늘을 생산하여 목포에 가지고 왔으나 소위 갈매기군등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포장을 전부 파손한 예등이 있다하는바 이러한 서건으로 말미암아 목포항발전에 중대 「암」이 되는 것으로서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함이 좋을 것 같기로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참가한다. ( 김창희 의원 동의에 삼청이 없음으로 폐기하다. )

◇정 응 표 의원

- 김창희 의원과 김상대 의원의 발언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니 부의안건 6항, 7항에 대한 전문적인 추진위원회 3명으로 구성할 것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성 균 의원

- 김창희 의원과 김상대 의원의 의견도 긴급 중요한 안전이니 이를 종합하여 목포항 명랑화 추진위원회라고 칭함이 좋을 것 같다.

정응표 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강 영 락

- 추진위원으로 1) 의장단중 1명 2) 김경인 3) 정응표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언하다.

◇이 부시장 답변

- 정응표 의원이 발언하신 오물소제사업에 있어서 시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비용의 염출은 시에서 하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사설 모-다선 취체 문제도 사법권이 없는 시로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니 방금 가결된 추진위원을 통한 좌담회 석상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강 영 락

- 폐회를 선언하다.

( 하오 12시 50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월 22일

시의원 명 남 철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92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1월 23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1월 23일 하오 1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박두순, 김남진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이 사무장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 92회 제 1회 회의록 통과
- 2) 각 상임 위원회 종합심의 상황보고 ( 내무위 )

#### ◆ 부의안건

제 1차 회의시와 동일함

### 8. 토의사항

#### ◎ 제 92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강 영 락 의원

- 부의안건 제 6항과 제 7항을 상정할때에 시장실에서 회의중인 검찰청장



과 경찰서장을 초청하자는 문구로 시정하기를 요망한다. 즉시 수정함. 기타  
이의 없음으로 통과

#### ◎ 각상임 위원회 종합 심의 상황보고

##### ◇정 응 표 의원 보고

- 1) 단기 4292년 일반회계추경예산중 문화 산업관계예산은 원안 통과로  
넘어왔다. 내무위에서도 원안무수정통과를 보았으나 세입 재산매각대  
500,000환증은 삭감하였다. 이유는 294호 화물자동차를 매각처분 할 것이 아  
니라 저반 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영세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운상 자동차  
로 개조하자는 대있는 것입니다.

- 2) 따라서 목포시 중요재산 매각 처분안중 화물자동차 관계도 폐기하였  
습니다.

- 3) 공설시장 사용금 관리 조례개정안은 원안 통과를 보았으며 시유 재산  
(토지)매각 처분안 및 교육 위원회 일시 차입안도 원안통과를 보았습니다.

- 4) 동정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과거 백분지백이든 것을 백분지 백이십으  
로 증

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감원되며 인건비 및 수용비가 감액된다는 것  
은 이

유에 타당치 않으며 차라리 백분지백으로 원상유지를 하든지 불연이면 백분  
지 오십을 적용하여 동정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는 견지에서 일용 비트하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 ◇강 영 락 의원

- 화물자동차 매각처분안을 폐기하였다는 내무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으나  
이 건은 그 의사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원만한 처리방법이라  
고 보아진다.

##### ◇의장 김 삼 성

- 단기 4292년 제 1회 목포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을 선언하다.

##### ◇김 일 섭 의원

-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

◇정 응 표 의원

- 화물자동차 매각안 폐기처분 문제는 내무위원회의 태도이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관련되오니 본 건 일응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명 남 철 의원

- 자동차 매각처분안의 귀결을 짓고 추경예산안을 심의 할것이 순서일 것이며 공설시장 포탈료 징수원은 향동은 삭감되었으나 남교동문이 살아 있는데 이유는 연동시장을 겸임시키게하고 남교동시장 포탈료 징수원도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 농촌개혁비 75만환을 예비비에 편입시켰다는 것도 허언에 불과하다.

◇조 양 순 의원

- 농촌개혁비 삭감 관계는 명 의원과 동감이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망한다.

◇이 정 권 의원

- 그 문제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한바있었으나 도비보조만 오게되면 어느 때든지 계상시킨다는 총무과장의 증언을 듣고 통과시킨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남교동 시장포탈료 징수원을 감원시키라는 견해도 있으나 실은 남교동부근 도로정비까지를 겸하고 있어 시장 번영에 기여한 비크며 그 사무량으로 보아 오히려 증원시켜야 할 것이다. 농촌 개혁비의 라디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1개동에 가로등을 10개소씩 가설하여 하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며 긴요한 문제라고 보아져서 이로하여금 월가월부함은 부당하다고 보아진다.

◇하 시장 답변

- 정응표 의원이 질문하신 영구차개조 문제는 연구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 총무과장 답변

- 농촌 개혁비를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도의 구두지시 만으로서 한 것이었으나 설사 금반에 예산에 계상 되더라도 보조가 없으면 쓸 수 없게되는 바로서 보조만 있으면 어느 방법으로라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 권 의원

- 자동차 매각 처분안을 선차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김 일 섭 의원

- 동의 철회하다.

◇의장 김 삼 성

- 추경예산안은 일독회까지 끝났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유 재산매각 처분안중 화물자동차 관계를 선차 상정할 것을 선언하다.

◎ 목포시 중요 재산 ( 화물자동차 ) 매각 처분안

◇정 응 표 의원

- 본 건 폐기할 것을 동의함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일반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심의할 것을 선언하다.

◇이 정 권 의원

- 본 건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급 관리조례중 개정안

◇김 경 인 의원

-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중요재산 (토지) 매각 처분안

◇강 영 락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를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안

◇김 성 균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 통과를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2년도 제 1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김 상 대 의원

- 본 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보건데 차라리 동사무소의 존재를 없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졌다. 그 이유는 일반 공무원은 제반 비행을 미연방지한다는 동장은 2만 5천환 서기는 2만3천 환이라니 언어도단이다. 이로 말미암아 시민에게 미치는 은근한 폐단을 여하히 조치할 것인가 시민부담을 가능한한 경감시키는데는 찬성하는 바이나 차라리 이기회에 동정세를 인상시킴으로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라고 보아져서 참고로 발언하는 바이다.

◇김 경 인 의원

- 저반 좌담회에 집행부로부터 A, B, C안을 내놓았으나 C안의 150/100까지를 적용하여 보았자 원만한 동정운영을 기할수 없는 것이다. 미국민의 24/1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그 반면 부담율은 훨씬 고액을 부

담하는 실정이며 동정세 3백만원 환을 인상조치 함으로써 제세징수에 3천만원 이나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동은 심지어 UN협회비를 징수 하러 다니는 형편이니 이 기회에 감원을 단행하여 재무과에 배치한 징세 직원도 전원감원하고 종전의 예대로 동정세 백분지백을 적용하여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상 대 의원

- 이런 것이 약소민족의 비애인 것이다. 전대법원장 김병로씨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없이는 그 비행을 막을 수 없다고 까지 한 바 있다. 종전대로 현상 유지를 하자는 것은 도저히 이해난이다. 그리고 동직원 보수를 종전보다도 인하 시킨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수 있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모순된 발언이고 이율배반격이다. 현재 본청 임시직원은 월 18,000환을 지급하고 있는데 낮잠자는 동직원에게 2만3천 환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다 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명 남 철 의원

- 사무비면을 검토하더라도 동당수용비 10,000환씩으로 여하히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면등을 고려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 제출하도록 원안 비트 할 것을 동의한다.

◇김 성 균 의원

- 찬성발언 하다.

◇정 응 표 의원

- 동직원의 봉급이 적다하여 우리의회 결의로써 2만 6천환씩 인상지급한 지 수개월이 못 되어 또 2만 3천환으로 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동직원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며 전후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본 의원의 소신은 세금을 인상하자고 주장하든 못하겠다.

◇이 정 권 의원

- 동의 폐합이 실현 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갑론 을박 자기의사만 주장한다면 집행부의 입장만 곤란 하여질 것이니 일응 명의원의 동의대로 집행부에 원안 반송토록 하여 좌담회라도 개최하여 원만한 타협을 보는 것이 가할 것 같다.

◇강 영 락 의원

- 예산안을 비트한다는 것은 지극히 삼가야 할 문제로서 여하한 타협점을 발견하여서라도 금일 중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의 동행정 운영면은 어디까지나 시행정의 보조기관밖에 안되는 것이며 전시와는 판이하여 별다른 사무가 없는 것인바 이것을 재인식하고 논의하여야 될 문제인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본 예산을 비트하자는 것은 불가항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의원이 발언한 좌담회를 가져 보았자 별다른 묘안이 없을 것이니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본 의원이 동직원의 감원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 순천등이 백분지 백오십을 적용한다하나 당시와는 판이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동의 폐합문제도 작년부터 건의한바 있었는데 모종 정치성이 개재되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바 동정세율을 한푼이라도 인상시킨다는 것은 반대하는 바이다.

◇이 정 권 의원

- 동의 폐합을 하느냐 불연이면 동정세를 인상하여 운영의 활발을 기하느냐의 기로라고 보아지니 가부간 좌담회를 가지는 것이다.

◇김 일 섭 의원

- 토론을 종결하고 명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여 표결에 부처 가결되다.

- 명남철 의원의 표결결과는 재석 14명중 찬성표 10표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금차 회기를 명 1월 24일까지 일일간 연장할 것을 선언하다.

- 산회를 선언하다.

( 하오 1시 15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월 24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이 정 권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92회 제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1월 24일 상오 11시 15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1월 24일 하오 2시 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의원 : 박두순, 김남진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총무 과장 장건식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 부의안건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8. 토의사항

#### ◎ 단기 4292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박찬대 시정 주무 - 제안 이유 설명(백분지 백오십으로 수정한 경정 예산안)

#### ◇김 상 태 의원

- 제2차 회의에 제안한 백분지 백이십의 세율도 고율이라 하여 월가월부 논쟁이 되었는데 금차 회의에는 백분지 백오십으로된 수정안을 내놓았음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 동에 무슨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심사숙고



하여야 될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규칙 발언을 하다.
- 작일 회의에서 비트 당한 안건을 동일회기 내에서 재 제출 할 수 없을 것이며 자연 폐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장 김 삼 성

- 그 안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작일 의회의 결의로서 재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김 경 인 의원

- 작일의 동의를 재 수정하여 제출토록 되었더라면 그 세율을 인상 조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이 수정안을 재제출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구체 방법은 그 날 자진철회 형식을 취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김 상 대 의원

- 작일의 회의에서는 재 제출하도록 합의를 하여놓고 금일에 와서 그러한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지연작전에 불과하지 않는가

◇김 경 인 의원

- 의회의 결의보다 법이 앞서는 것이며, 작일에 발견 못 하였던 모순을 금일 시정코자 하자는 것이다.

◇이 정 권 의원

- 김경인 의원의 발언대로 고집만 하게 되면 피차 감정 대립만 유발되는 것이니 이외 구체 방법을 강구하여 그 세율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김경인 의원의 발언이 사회에 부합되는 것이나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한 형식을 취하여 주기 바란다.

◇박 찬 대 시정 주무

- 집행부의 태도를 천명하겠습니다.

작일의 안은 집행부에서 철회한 것이고 금일의 안을 재 상정시켰습니다.

- 각 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

- 김경인 의원 퇴장 (재석 13명 상오 11시 50분)

◇강 영 락 의원

- 백분지 백오십으로 수정된 이 안은 종전안보다 증액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소정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작일 영해동민 한사람은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까지 빚어낸 현 실정인데 시민의 부담력을 무시한 여사 수정안 가지고는 논의 대상도 안될뿐더러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작일은 백분지 백이십의 세율에 대하여도 일부 의원들은 고율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반하여 이를 전적 무시하고 금일은 백분지 백오십을 내놓았으니 만일 이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본 의원은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 안으로서 월가월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원 좌담회라도 개최하여 의사를 종합 할 기회를 가지도록 함이 선책일 것 같다.

◇명 남 철 의원

-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안을 심의하는데 무슨 불법이 개재하였다는 말인가

◇김 상 대 의원

- 동사무소를 좀더 발전시키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단 말인가

◇김 창 희 의원

- 과거의 경험과 타시의 예를 보더라도 백분지 백의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동정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바로서 작일 의회

에 제안하였던 백분지 백이십이 좌절된데 대하여 금일은 백분지 백오십으로 된 수정안이 제기 되었는바 우리 의회에서는 소속정당의 구별과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상호 양보한다는 견지에서 백분지 백삼십오의 중간 비율을 채택함이 가할 것 같다.

◇조 양 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의결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시한다. 양측 합의하여 절충안을 모색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저반 제1회 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은 중대한 증언을 하신바 있다. 상수도 공사에 수반한 제1회 공채 소화도 미진되고 있는 차제 신년도에 이르러 또다시 총 공사비의 3, 4월에 해당하는 액면을 자체 부담을 하라고 한다니 만약의 경우는 이 공사를 좌절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한 바도 있어 우리 목표의 장래를 위하여 중대한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금반 동정세율을 백분지 백오십으로 인상시키는 경우 호별세의 징수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를 주무과장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동의 강화만을 위한다는 견지에서 대의를 몰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호별세 전체액면의 징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내무위원회를 갖기 위하여 당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하다.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4시 10분

- 내무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동정세율을 백분지 백으로 인하하자는 김경인 의원의 동의가 폐기되고 원안 백분지 백오십으로 통과하자는 김일섭 의원의 개의를 4대 1로 통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백분지 백오십으로 통과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1) 저반 좌담회 석상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백분지 백이십으로 하자고 주장 하더니, 급작이 백분지 백오십으로 하도록 종용한 것이 모순이라 하겠으며  
(2) 시민의 부담력을 감안하여 시의원된 본분을 지킴으로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이룩하자는 것이고  
3) 하시장의 증언과 같이 상수도 공사에 수반한 지방부담의 3, 4할론이 나오고 있는 차제 만약의 경우 일할선까지의 부담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며  
감원될 몇 십명의 동 직원의 입장보다 13만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결론 밑에서 본의원은 백분지 백을 동의하였던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동특 예산안은 어떠한 감정적, 정실적, 정치적이 개재된 성질의 것이 아닐 것이다. 집행부에서 백분지 백오십으로 채택한 처사를 의아 아니할 수 없으며 금반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반역자라 규정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리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을 인상하자는 지방의회는 천상 천하에는 없을 일일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김 창 희 의원

- 백분지 백오십 선을 기어코 주장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곤란하다. 시민의 부담력도 감안하여 백분지 백삼십오 선을 주장하는 바이다.

◇김 성 균 의원

- 강영락 의원의 반역자 운운의 발언은 너무 흑심한 언동이다. 백분지 백을 한사코 주장하는 측이나 백분지 백오십을 고집하는 측의 시정발전에 기여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즉 전자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후자는 우회하는 원인이 되리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또 과거 5년 동안 주변동은 심지어 백분지 오백선까지 부담하였는가 하면 중앙동은 백분지 오십정도 밖

에 안되었다는 것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강영락 의원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한다.

◇정 응 표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요망한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백분지 백오십으로 일약인상한다면 다소애로도 있을 것이나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김 창 희 의원

- 양 측에서 호양지심을 발휘하여 일보씩 양보하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김 상 태 의원

- 김경인 의원 발언에 찬성 발언이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동특예산 심의에 있어서 일부의원들의 중앙동이니 변방동이니 하는 지역 대표인 것 같은 언동은 삼가 주기 바란다.

◇명 남 철 의원

-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감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차라리 동자치 운영의 종전의 예로 돌아갈 망정 백분지 백오십 적용은 절대로 반대하는 바이다. 허심탄회하여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본 의원이 반역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만약, 시민의 기대에 어긋난 의결을 하였다면 반역자가 된다는 말이었으나 이 발언은 취소한다.

◇김 성 균 의원

- 정계 위원회 동의를 철회한다.

◇의장 김 삼 성

-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차회기를 래 1월 25일까지 연장할 것과 제 3차 회의는 산회할 것을 선언한다. (하오 2시 0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월 24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상 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92회 제 4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1월 25일 하오 3시 0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1월 25일 하오 5시 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부의장 강 영 락

5. 출석의원 : 재석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박두순, 임석희 의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 부의안건

단기 4292년 제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장 강 영 락

- 안건 상정을 선언한다.

### ◇조 양 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0분간 휴회함이 좋을 것 같다.

### ◇이 정 권 의원

- 2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 - 삼청

- 표결결과 만장일치가결

◇강 영 락 부의장

- 20분간 정회를 선언한다. (사회를 교체한다.)

◇의장 김 삼 성

- 속개를 선언한다. (하오 2시 30분)

◇김 창 희 의원

- 백분지 백오십을 주장하는 측과 백분지백을 고집하는 양측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나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나온 우리의 본분을 살려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화기에애한 가운데 종결을 짓도록 할 것을 전제하면서 본 건 세입 백분지 백삼십오로 인하하여 수정통과 시키도록 할 것을 동의한다.

◇김 상 태 의원

- 13만 시민의 출혈을 강요하여 구태여 동직원 53명을 살리자는 의도가 무엇인가

◇김 창 희 의원

- 그것은 동정에 대한 인식을 잘못된데서 오는 것 같다.
- 동직원은 무위도식만 한 것 같으나 문맹퇴치, 부녀계몽, 국론통일 등 제 1선에서 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인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본 건으로 인하여 5일간에 걸쳐 왈가불가 논의하였으니 이에 대한 장광설은 불필요하며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종합 안된다면 본 의원의 백분지 백오십의 원안 통과를 개의하겠다.

◇정 응 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인 백분지 백삼십오를 적용한다면 동장의 보수가 2만 천 환이고 동 직원이 2만 환이 되는데 정부방침인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로써 동 직원을 2만6천 환씩 지급한지 2 ~ 3개월만에 또 다시 2만 환으로 인하시킨다는 것은 동 직원들을 농락하는 수법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세금은 35%나 오르는데 보수는 감액시킨다는 것도 모순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일부 동 직원을 감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 하여야 할 것이다.

◇김 창 희 의원

- 현금 동 직원들의 심사는 차라리 그 보수에 감액이 오더라도 감원이 없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5분간 정회를 선언한다.
- 속개를 선언한다. (하오 4시)

◇김 성 균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재청 찬성발언을 한다.

◇이 정 권 의원

- 민주당 소속 의원측에서는 백분지 백십오 선까지 양보한 것 가지고 자유당 의원측에서는 백분지 백삼십오를 주장하니 본 의원은 그의 절충안으로서 백분지 백이십오로 할 것을 개의한다.

◇김 경 인 의원

- 백분지백으로도 동정쇄신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 일반회계에서 백만환 정도 전입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본 건 심의하는데 있어 자유당 의원들은 중심을 잃고 있으며 의장은 공정한 의사진행을 하여주기 바란다.

◇김 일 섭 의원

- 토론 종결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음
- 표결결과 재석14명 중 찬성 9표로 가결.

◇의장 김 삼 성

- 각 동의를 표결할 것을 선언
- 이정권 의원 동의는 재청없으므로 폐기.

◇김 경 인 의원

- 세입 백분지백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개의
- 재청- 삼청이 있었음.
- 표결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4표로 부결.
- 김창희 의원동의를 표결에 붙여 재석 14명 중 찬성 9표로 가결.

◇김 창 희 의원 긴급동의

- 최근의 연합신문 지상에 우리의회에서 목포시 교육위원회 예산을 통과시킴에 10만 환씩을 받았다는 중대보도가 있는 바, 이의 사실여부를 규명키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동의.

◇김 경 인 의원

- 찬성하면서 조사위원 4명을 의장이 지명할 것을 첨가. 동의집 수락.

◇이 정 권 의원

- 본 건 취소기사가 너무 적게 났으니 연합신문사 사고로 하여 그 취소를 대대적으로 발표토록 요청함이 좋을 것 같다.
- 김창희 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친바, 만장일치로 가결.

◇의장 김 삼 성

- 조사위원으로 강영락, 김삼성, 김경인, 정용표 의원을 지명.

- 폐회를 선언하다.

( 하오 5시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월 25일

시의원 명 남 철

시의원 김 경 인

작성자 서기 주 도 식